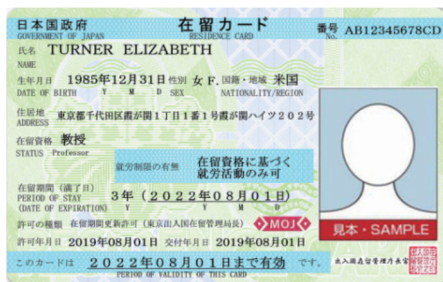




1

체류카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이 적혀 있습니다.



- 16 세 이상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 시구정촌에서의 각종 수속, 신청, 계약 등을 할 때 신분증으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 발급대상자

체류카드는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체류카드 발급대상자를 ‘중장기체류자’ 라 합니다).

[체류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6 가지 경우]

- ①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자
- ② 체류자격이 ‘단기체재’ 인 자
- ③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 인 자
- ④ 체류자격이 ‘특정활동’ 으로, 대만일본관계협회의 일본 사무소 (台北 (타이페이) 주일경 제문화대표처 등) 혹은 주일팔레스티나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
- ⑤ 특별영주권자
- ⑥ 체류자격이 없는 자

1-1

체류카드 발급

체류카드가 발급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②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①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했을 때

➡ 일본 입국 후 거주지 시구청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에 체류카드가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③ 체류기간 연장 (갱신) 허가를 받았을 때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출장소를 포함. 이하 생략)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2-1 참조)을 한 후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

➡ 일본에서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 변경신청 (2-2 참조)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⑤ 체류자격 취득허가를 받았을 때

➡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본 국적 없이 생후 60 일을 초과하여 계속 일본에 체재하고 싶다면, 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취득신청 (2-4 참조)을 하여 허가받으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1-2 거주지신고 (전입신고)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거주지 (주소)가 확정된 후 14 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구청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체류카드 (1-1의 ①의 경우) 또는 여권 (1-1의 ②의 경우)이 필요하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장 1-1 거주지 신고를 참조

1-3 체류카드의 분실

체류카드를 분실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을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사진 1 장 (세로 4cm × 가로 3cm,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체류카드 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실물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재해증명서 등)
-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0.html



1-4

체류카드의 반납

다음과 같은 경우 체류카드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단순출국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할 때)

- 출국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했을 때
- (임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임시) 재입국 허가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않았을 때
-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택해 14 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지고 간다.
-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보내는 곳: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7-11

東京港湾合同庁舎 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オンライン審査部門おだいば分室

(봉투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 (체류카드 반납)**'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20.html



2

체류자격에 관한 신고 절차

2-1

체류기간 연장 (갱신)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발급받았을 경우)
- 사진 1 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체류기간 연장 (갱신) 허가 신청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1.html>

- 활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2-2

체류자격의 변경 (일본에서의 체류목적을 변경할 경우)

현재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체류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발급받았을 경우)
- 사진 1 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1.html>

- 활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체류자격에서 찾기○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index.html>



2-3 영주허가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의 활동이나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수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사진 1 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영주허가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2-4 체류자격의 취득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본국적이 없는 상태로 생후 60 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려면 출생 후 30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설명하는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먼저 시구청촌에 출생신고를 끝마친 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이 신청 (체류자격 취득신청) 을 하십시오.

제 4 장 2 2-1 출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발급받은 경우)
-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시구청촌에서 발급합니다) 등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활동 예정을 증명하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10.html>

-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시구청촌에서 발급합니다)



2-5 자격외 활동허가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유학, 가족체재 등) 이나 취업범위가 정해진 체류자격의 범위 외의 일로 수입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취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 3 장 1 1-1 체류자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 수입과 보수를 얻는 활동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8.html>



2-6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대한 신고 절차

체류카드 소지자 중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속기관 등에 변경이 있을 때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교수, 고도전문직 1 호 八 (하), 고도전문직 2 호 (2 호 八 (하)에 제시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내 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 활동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 활동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 활동기관이 없어졌을 때 · 활동기관에서 이탈했을 때 · 활동기관에서 이적했을 때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4.html



(2)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고도전문직 1 호 イ (이), 고도전문직 1 호 ロ (로), 고도전문직 2 호 (2 호 イ (이) 또는 ロ (로) 에 제시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구,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간병, 흥행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 계약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 한정됨), 기능, 특정 기능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 계약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 계약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 계약기관이 없어졌을 때 · 계약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 계약기관과 새로이 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3) 배우자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가족체재’,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중에서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와 사별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6.html



이 신고들은 창구에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i-ens_index.html



원 포인트: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우대제도

일본의 경제성장 등에 공헌이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체류기간에 우대조치가 주어집니다.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학력', '경력', '연수입' 등 각 항목마다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여 포인트 합계가 70 점 이상이 되어 '고도외국인재'로 인정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적인 체류활동의 허용
- 최장 체류기간인 '5년'의 부여
- 영주허가요건 중 일본에서의 체류력에 관한 요건의 완화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index.html



2023년 4월부터 '특별고도인재 제도' (J-Skip) 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자가 특정 학력,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수준의 연수입을 초과하면, '특별고도인재'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포인트제 기반의 고도외국인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ukokukanri01_00009.html



3

재입국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한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인정된 기한 안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체류기간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임시재입국허가 (1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경우)

체류카드 소유자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하여 1년 이내 (체류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에 일본에 돌아올 때에는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입국허가 (1 년 이상 일본을 떠날 경우)

사전에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해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하면 현재의 체류 자격·체류기간으로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최장 5 년 . 체류기한이 5 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5.html>



4 난민인정 절차

일본은 난민조약 등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에 가입되어 있어 이 조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을 인정하며 난민에게 각종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4-1 ‘난민’ 이란

난민조약 제 1 조 또는 난민의정서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난민조약이 적용되는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 충분히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등

4-2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 난민인정 신청이란 본국에서 도망쳐 온 난민 (4-1 참조) 이 일본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이 신청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고 ‘정주자’ 등의 체류자격이 허가됩니다 .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신청에 근거하여 여권 대신 도항문서로서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일본어교육과 생활 가이드 , 직업소개 등 ‘정주 지원 프로그램’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anmin_tetuduki_00001.htm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6.html>



4-3 심사청구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법무대신에게 이의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법률과 국제정세 등에 식견이 있는 난민심사참여원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nanmin_tetuduki.html



5

강제퇴거 절차 등

5-1

강제퇴거의 주된 이유

- 체류기간이 경과했는데 일본에 체류하는 것 (하루라도 경과하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 절차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수입 또는 보수를 얻고 있는 것
-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5-2

강제퇴거가 됐을 경우

강제퇴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또는 10년간 일본에 입국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5-3

출국명령제도

불법체류 중 아래의 모든 요건을 채울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출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출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출국명령제도의 요건

- 출국명령제도가 적용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것
 - 불법체류 외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일본에서 절도 등의 일정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
 - 과거에 강제퇴거된 적이 없을 것
 -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지체없이 출국하는 것이 확실할 것



5-4

체류특별허가

강제퇴거절차가 집행되더라도 일본에서 생활해 온 내용 (품행), 가족상황등을 고려하여 법무대신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출입국과 체류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札幌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	〒 060-0042 北海道札幌市中央区大通西 12 丁目	0570-003259(대표) (IP 전화 · 해외에서 : 전화 011-211-5701)
仙台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 983-0842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五輪 1-3-20	전화 022-256-6076(대표)
東京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 5-5-30	전화 0570-034259 (IP 전화 · 해외에서 : 03-5796-7234)
東京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요쓰야분청사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タワー 1 4 階	전화 0570-011000(8번) (IP 전화 · 해외전화 : 03-5363-3013)
	재류 조사 부문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소속기관을 통한 신고	전화 03-5363-3032
	온라인 심사 부문 체류 온라인 신청 수속	전화 03-5363-3030
	정보 관리 부문 심사 기록 관리	전화 03-5363-3039
成田 (나리타) 공항지국	〒 282-0004 千葉県成田市古込字古込 1-1 成田国際空港第 2 旅客 Terminal bldg. 6 階	전화 0476-34-2222(대표)
	(審査管理部門)	전화 0476-34-2211
羽田 (하네다) 공항지국	〒 144-0041 東京都大田区羽田空港 2-6-4 羽田空港 CIQ 棟	전화 03-5708-3202(대표)
横浜 (요코하마) 지국	〒 236-0002 神奈川県横浜市金沢区鳥浜町 10-7	전화 0570-045259 (IP 전화 · 해외전화 : 045-769-1729)
名古屋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 455-8601 愛知県名古屋市港区正保町 5-18	전화 0570-052259 (IP 전화 · 해외에서 : 052-217-8944)
中部 (주부) 공항지국	〒 479-0881 愛知県常滑市 CENTRAIR 1-1 CIQ 棟 3 階	전화 0569-38-7410(대표)
大阪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 559-0034 大阪府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 1-29-53	전화 0570-064259 (IP 전화 · 해외에서 : 06-4703-2050)
関西 (간사이) 공항지국	〒 549-0011 大阪府泉南郡田尻町泉州空港中 1 番地	전화 072-455-1453(대표)
神戸 (고베) 지국	〒 650-0024 兵庫県神戸市中央区海岸通 29 番地	전화 078-391-6377(대표)
広島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 730-0012 広島県広島市中区上八丁堀 2-31	전화 082-221-4411(대표)
高松 (다카마쓰) 출입국재류관리국	〒 760-0033 香川県高松市 Marunouchi 1-1	전화 087-822-5852(대표)
高松 (다카마쓰) 출입국재류관리국 하마노초 분청사	〒 760-0011 香川県高松市浜ノ町 72-9	전화 087-822-5851(대표)
福岡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 810-0073 福岡県福岡市中央区舞鶴 3-5-25	전화 092-717-5420(대표)
那覇 (나하) 지국	〒 900-0022 沖縄県那覇市樋川 1-15-15	전화 098-832-4185(대표)
東日本 (히가시 니혼) 입국관리센터	〒 300-1288 茨城県牛久市久野町 1766-1	전화 029-875-1291(대표)
大村 (오무라) 입국관리센터	〒 856-0817 長崎県大村市古賀島町 644-3	전화 0957-52-2121(대표)

외국인재류지원센터

외국인재류지원센터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タワー 13 階	전화 0570-011000 (IP 전화 · 해외전화 : 03-5363-3013)
-----------	--------------------------------------	--

인포메이션 센터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仙台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東京 (도쿄) 출입국재류관 리국, 同局横浜 (요코하마) 지국, 名古屋 (나고야) 출입국재 류관리국, 大阪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同局神戸 (고베) 지국, 広島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福岡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설치	전화 0570-013904 (IP 전화 · PHS · 해외에서 : 03-5796-7112)
상담원이 배치된 곳	札幌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 高松 (다카마쓰) 출입국재 류관리국 및 福岡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那覇 (나하) 지국에 배치	

7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 정보 전달

7-1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재류수속 등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이외에도, 자동 번역을 통해 100 개 이상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j.go.jp/isa/index.html>



7-2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SNS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각종 SNS 등을 개설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나 재류외국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X (예전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MOJ_IMMI



출입국재류관리청 Facebook 계정

<https://www.facebook.com/ImmigrationServicesAgency.MOJ/>



메일 전달 서비스

<https://www.moj.go.jp/isa/about/pr/mail-service.html>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X (예전 트위터) 계정에서는 창구 혼잡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계정 모음

<https://www.moj.go.jp/isa/about/pr/index.html>

